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3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서왕진·김준형·조 국

조인철 · 김재원 · 이해민

강경숙・박은정・차규근

김성환 · 김선민 · 신장식

황운하 • 민병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 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u> 기금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	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		
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		
	<u>며, 그 밖에</u>		
	<u>,</u>		
<u><신 설></u>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u>기술보증기금</u>		
<u><신 설></u>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u>신용보증기금</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